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p>주식회사 하나은행(앞) 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과 약정한 _____년 _____월 _____일자 대출거래약정을 함 에 있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는 주택저당채권 유통화 업 무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동 주택저당채권 유통화 를 위하여 본건 대출 및 담보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신탁 포함)되는 경우에도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본건 대출을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본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 유통화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p> <p>제1조 채권의 양도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본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 유통화와 관 련하여 본건 대출 및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p> <p>1. 본인은 은행이 주택저당채권 유통화를 위해 이 약정 에 따른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양수함을 승낙하며, 본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도 한국주택금 융공사는 본인에 대하여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행사 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다만,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이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되는 시 점까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한국주택금융 공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p> <p>2. 본인은 제1호의 양도 및 양수와 관련하여 근저당권 의 피담보채권은 은행이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을 한 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하는 시점에 확정됨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따라 은행으 로부터 추가대출 등을 위하여 이 약정에 의한 대출채권 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며, 이를 확인합니다.</p> <p>3. 본인은 제1호의 양도 및 양수와 관련하여 당초 약정 시의 대출조건이 만기시까지 그대로 적용됨에 동의합니 다.</p>	<p>주식회사 하나은행(앞)</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제1조 채권의 양도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4. 적격전환대출로 취급한 경우 본인은 본 대출에 대하여 매개로 인한 주택소유권 이전 등 기타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3자 앞 채무인수가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5. 적격전환대출 취급후 유동화 과정에 있어서 대출채권이 유동화 비적격대출로 분류되는 경우 대출만기 도래여부와 관계없이 상환하거나 다른 유동화되지 않는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대출로 변경할 때 감독기관이 정한 담보인정비율(LTV) 및 은행내규에 따라 대출이 취급되며, 기존 적격전환대출에 따라 취급된 담보인정비율(LTV)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초과금액부분은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2조 중도상환해약금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제4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1. 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당초 약정한 대출기일전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호의 계산산식에 의해 중도상환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2. 대출실행일로부터 ()년 이내 상환시 ()%
가.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률을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으로 합니다.
나. 『대출잔여일수』는 상환방법에 상관없이 대출기간에서 경과일수(최초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하여 구합니다.
다.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대출기간이 ()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년으로 하여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을 계산하기로 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
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등에 해당되어 은행이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나. 담보물건의 공용수용 등 공익 목적 국가사업 추진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기상환의 경우

제2조 중도상환해약금

(좌동)

제3조 주택보유수

- ①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보유한 주택(지분으로 보유한 경우, 복합용도 주택인 경우

(신설)

주택지분이 1/2 이상인 경우,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이 없음을 약속합니다. 다만, 본건 담보주택 외에 아래와 같이 1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 주택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약정하며, 위 약정에 따른 처분사실을 은행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에 본건 대출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② 또한, 향후 정부 주택전산망 기타 증명에 의하여 주택 소유에 대한 약속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본건 대출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주택보유현황 (본건 담보주택 제외) ※ 배우자 소유 합산	<input type="checkbox"/> 무주택 <input type="checkbox"/> 1주택(처분 예정)
처분예정주택 소재지	

(신설)

제4조 유한책임대출

1. 유한책임대출은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취급된 경우 제외)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이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합니다.
2.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점수 미달인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유한책임 대출과 유한책임대출이 아닌 적격대출은 혼용하여 대출할 수 없습니다.
5. 유한책임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MCI, MI 등 보험(보증)상품 이용이 불가합니다.